

第109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第1號(附錄)  
**財務建設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目 次

- 1. 서울特別市鐘路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 1面
- 2. 都市計劃 用度地域·地區變更決定(案)에 대한 意見聽取 ..... 4面
- 3. 都市計劃事業道路 保留決定에 따른 再檢討(案)에 대한 意見聽取 ..... 14面

1. 서울특별시종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798
-----------	-----

제출년월일 : 2001. 3. .  
 제 출 자 : 종 로 구 청 장

1. 개정이유

기존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우리구 수입증지조례중 행정편의 규제성을 띤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제1조 단서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을 “사용료 수수료의 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증지의 납부가 불가능할 때에는”으로 수정하여 구체적이며 순화된 내용으로 개정(안 제1조 단서)

3. 개정근거

2000년 종로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00.10.4)

4. 예산수반사항 : 필요없음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단서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을 “사용료 수수료의 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증지의 납부가 불가능할 때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I. 안건명 :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II. 도시계획변경결정(안) 조서

1. 자연경관지구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일반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명칭	구분	연번	위 치	면 적(m <sup>2</sup> )		
				변경전	변경후	증 감
계			4개 지역			감)27,626.2
인왕 지구	변경	소계	3개 지역	751,925.9	730,229.8	감)21,696.1
		1	종로구 팔판동 115-1일대			감)11,490.6
		2	종로구 삼청동 20일대			감)4,046.5
		3	종로구 삼청동 27-3일대			감)6,159.0
성북 지구	변경	1	종로구 혜화동 5-50일대	1,761,114	1,755,183.9	감)5,930.1

2. 자연경관지구내 건축규제완화관리지역

연번	지구명	위 치	면적(m <sup>2</sup> )	건축규제사항	비고
계		12개 지역	68,388.1	건축규제완화 관리지역	
1	평창 지구	종로구 평창동 154-1일대	7,603.0	-건축물의높이:4층 이하, 15미터이하	
2	"	종로구 평창동 148-21	1,303.0	"	
3	"	종로구 평창동 296-2일대	9,431.0	"	
4	"	종로구 신영동 5-1일대	2,998.0	"	
5	"	종로구 신영동 10-1일대	4,576.0	-건폐율:40%이하 -건축물의높이:4층 이하, 15미터이하	
6	"	종로구 신영동 72-2일대	5,022.0	"	
7	"	종로구 신영동 130-1일대	4,865.0	"	
8	"	종로구 홍지동 93-2일대	13,208.0	"	
9	"	종로구 구기동 54-3일대	11,686.0	-건축물의높이:4층 이하, 15미터이하	
10	인왕 지구	종로구 청운동 12일대	1,171.3	"	
11	"	종로구 청운동 52-58일대	2,050.9	"	
12	"	종로구 삼청동 157-83일대	4,473.9	"	

Ⅲ.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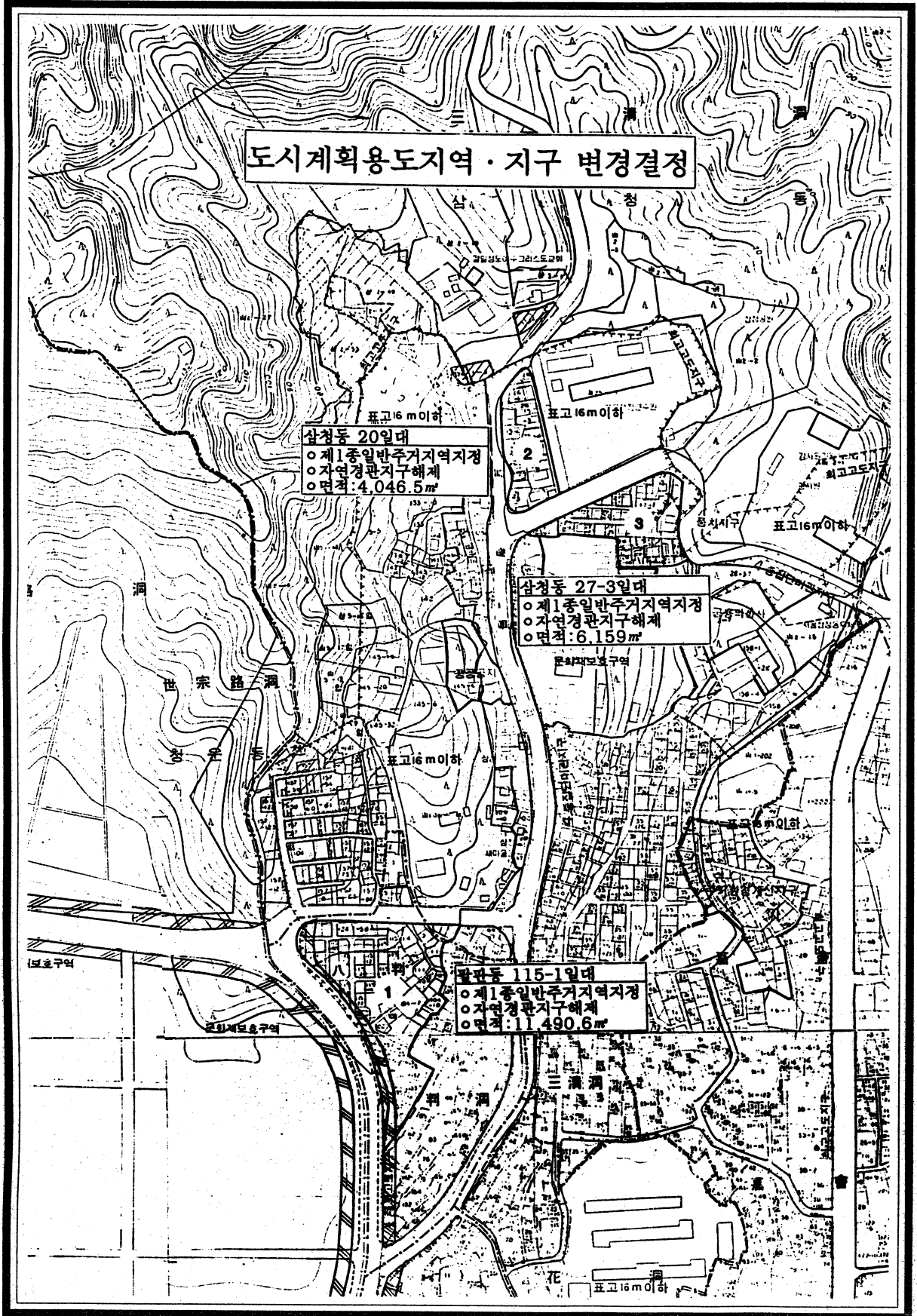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우리구 관내 자연경관지구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안) 및 자연경관지구내 건축규제완화관리지역(안)을 수립 공람공고 하였기
-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7항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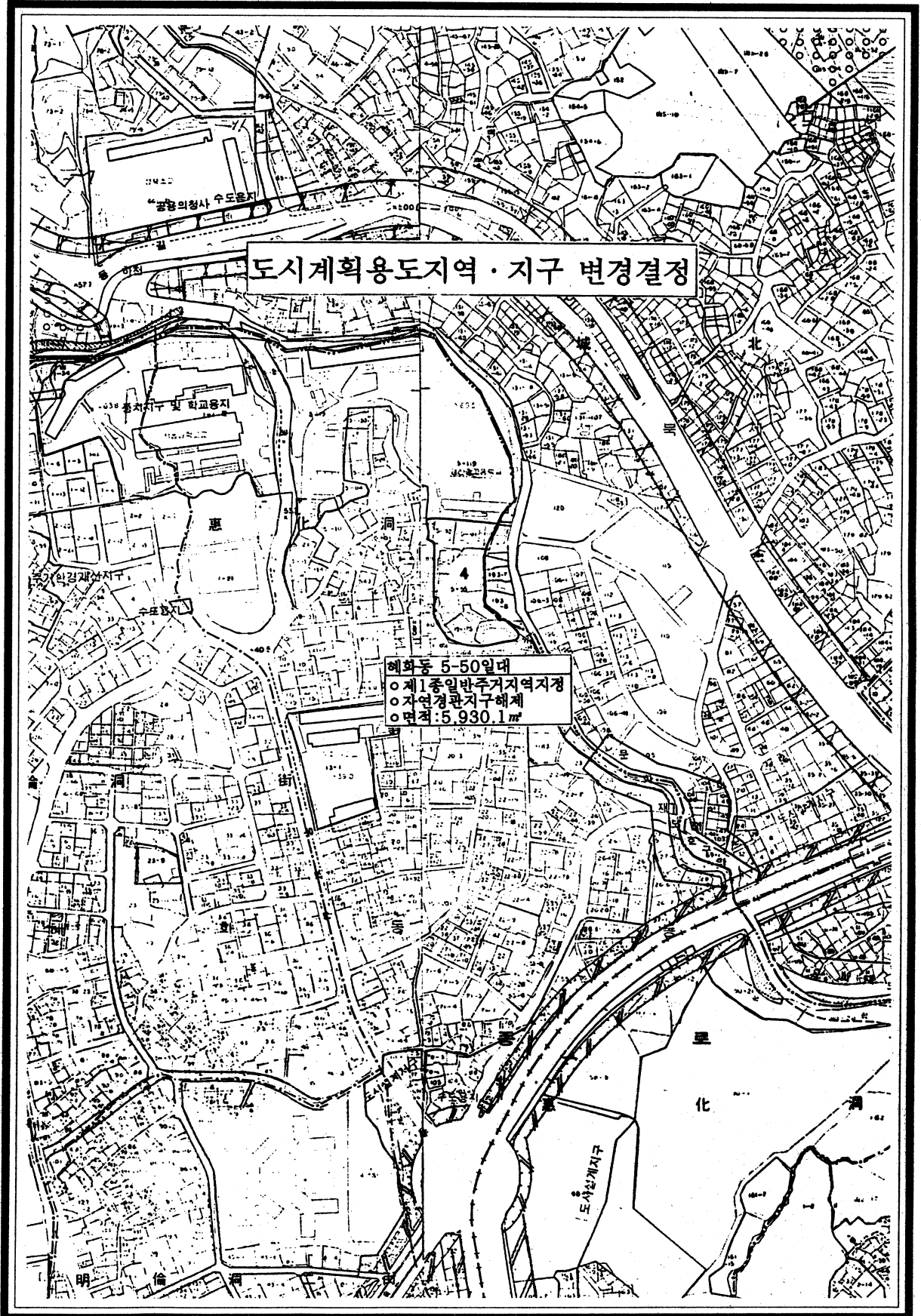
Ⅳ. 기타.

1.공람공고에 대한 주민 및 관련기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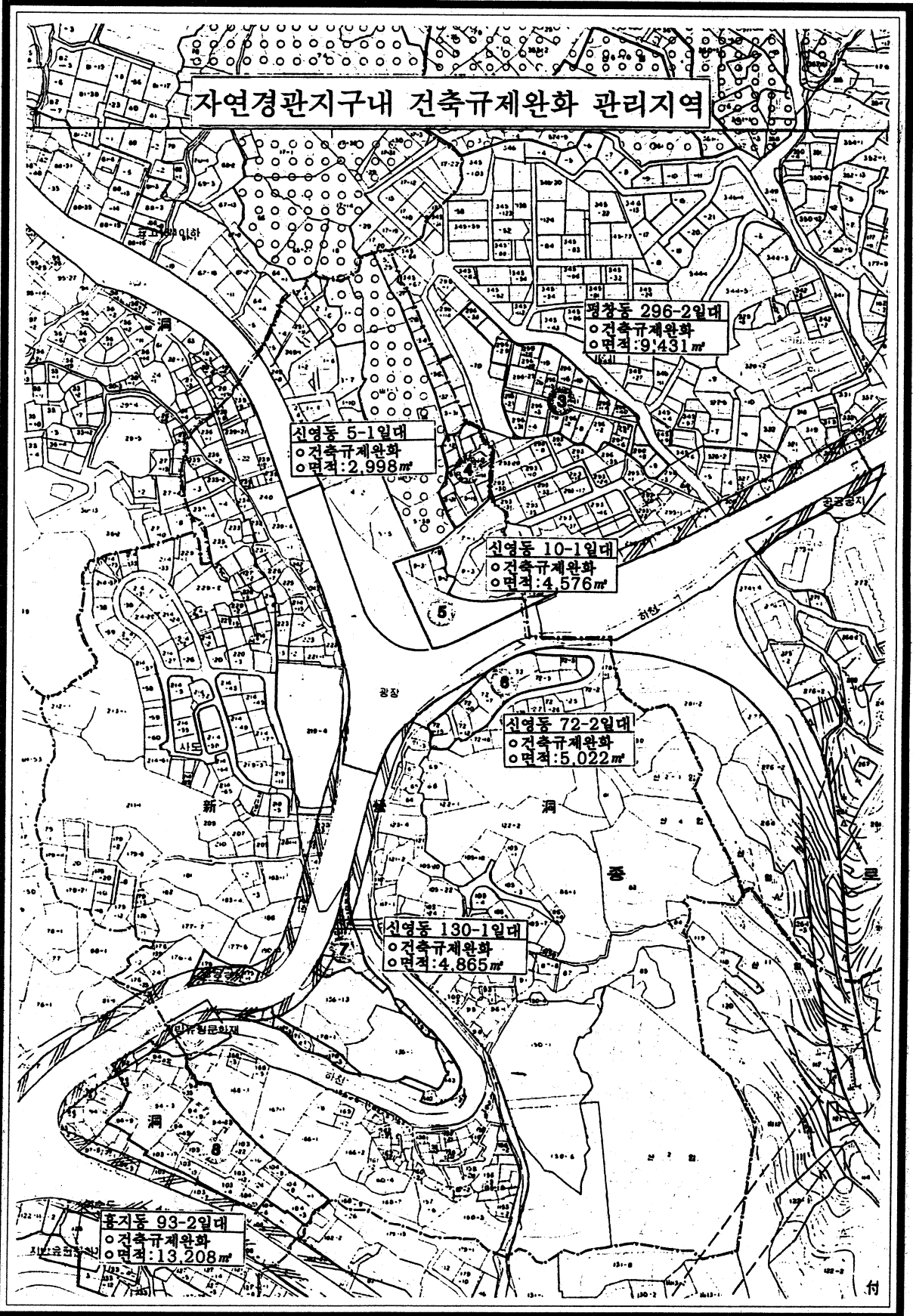
연번	안 건 명 (공람기간)	주 민 의 건	비고
1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안) (2001.1.29~2.12)	의견 없음	
2	(서울시도시계획과)	1. 자연경관지구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일반주거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 4개지역 : 자연경관지구 해제는 바람직하지 않음 2. 자연경관지구내 건축규제완화관리지역 - 12개 지역 : 현행 건축규정 유지가 바람직함 또는 건축규제완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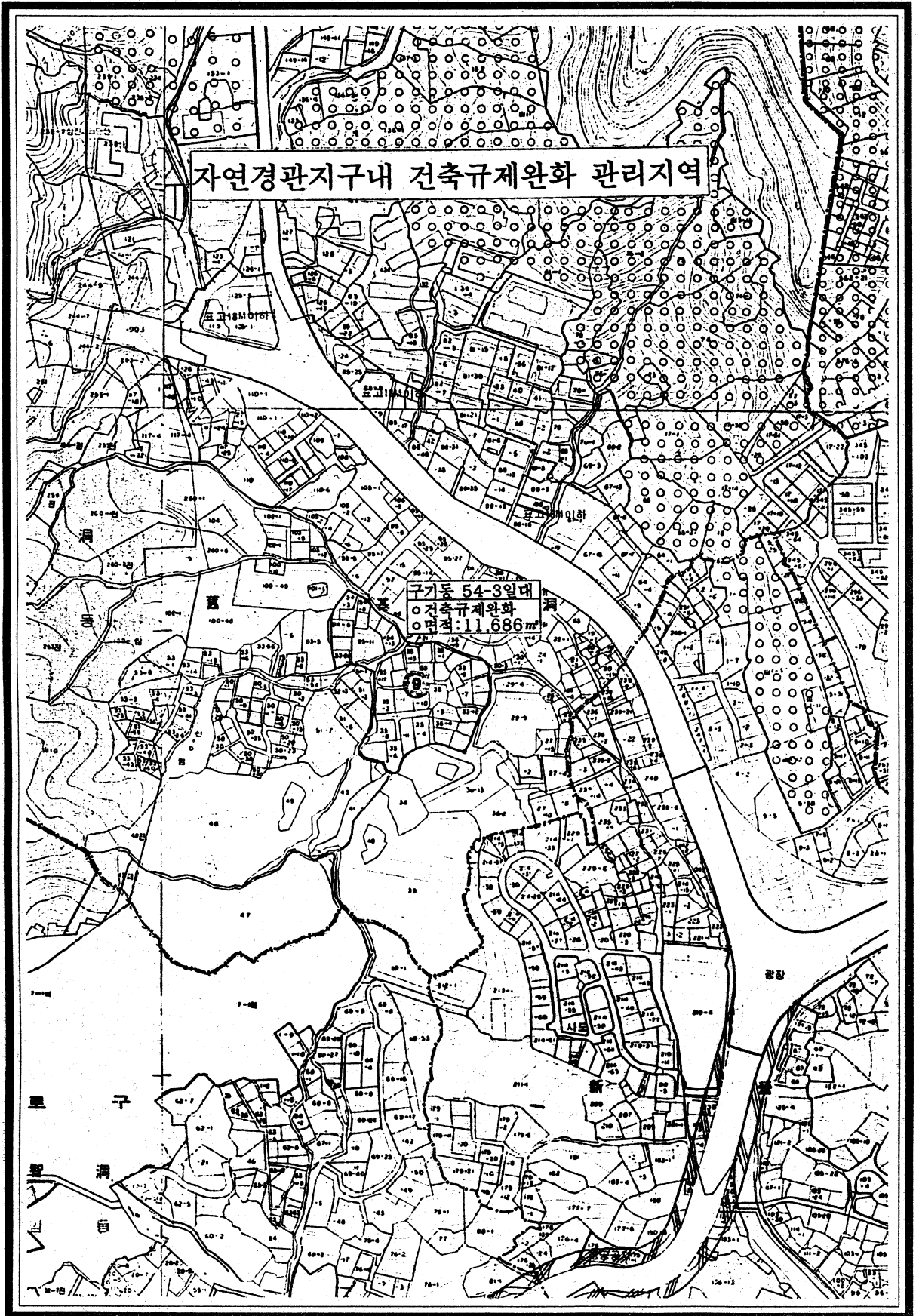
붙임 : 위치도 1식.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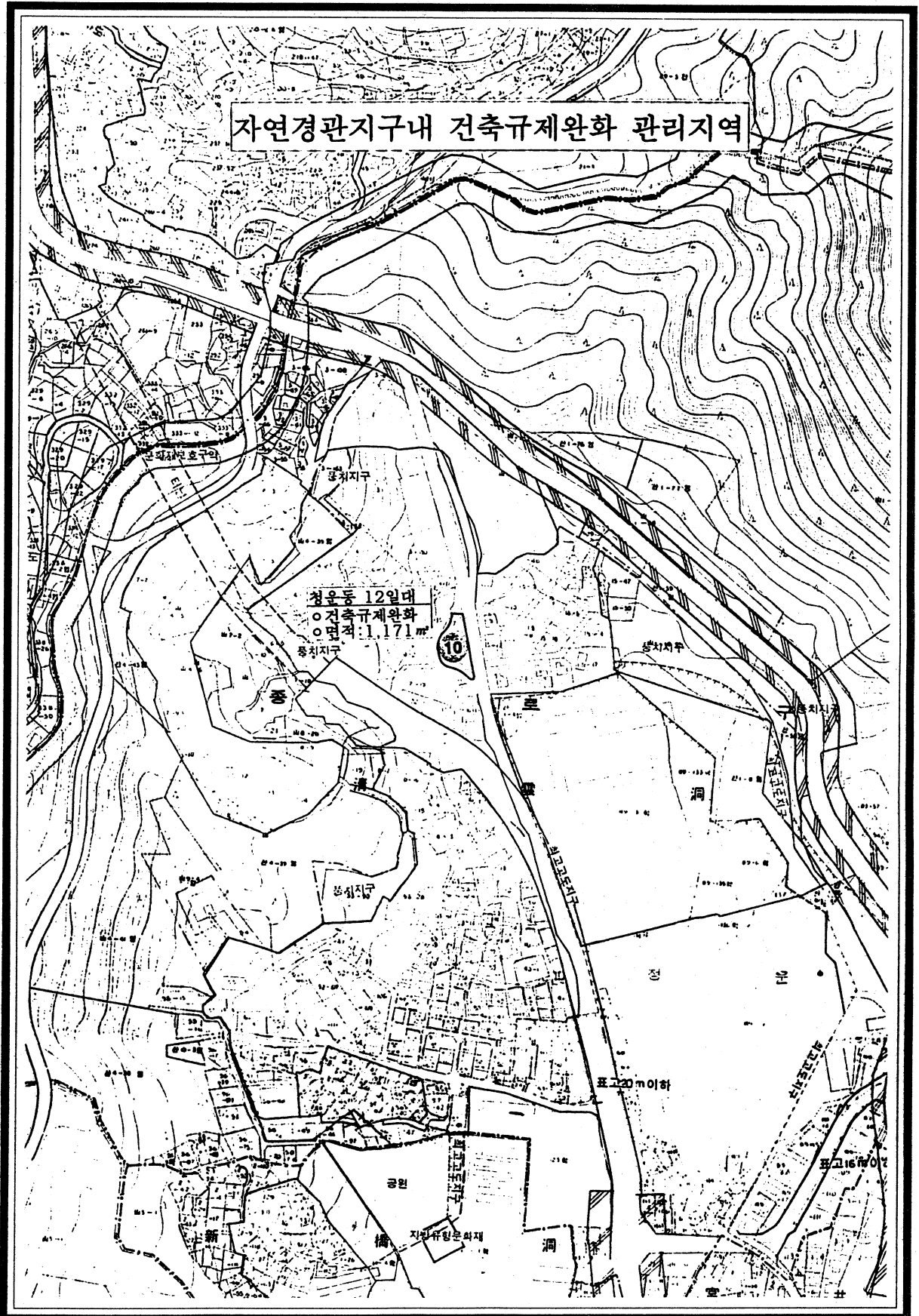
















### 3. 도시계획사업도로 보류결정에 따른 재검토(안)에 대한 의견청취

I. 안건명 : 도시계획사업(도로) 보류결정에 따른 재검토(안)

#### II. 사업현황

- 공사명 : 송인동 411~431간 도로개설공사
- 위치 : 송인동 411~431번지간
- 사업개요 : B= 10m, L= 180m
- 사업기간 : 2000. 4 ~ 2002. 12
- 전년예산 : 590백만원, 보상비(집행액) : 469백만원, 잔액 : 121백만원
- 금년예산 : 300백만원

#### III. 도시계획사업(도로) 보류결정사유

- 본 사업 구간 중 송인동 408~362-2간을 도시계획시설(도로) 선형변경(10→ 8m)코자 검토하였으나, 2000년 제7차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선형변경(안) 심의결과 선형변경은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고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후 연계하여 재검토하도록 보류 결정

#### IV. 추진경위

- 1963. 07. 01 :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건고 제432호
- 2000. 03. 24 :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공람공고 제2000-78호
- 2000. 04. 22 :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고시 제2000-20호
- 2000. 06. 21 :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제2000-39호
- 2000. 11. 17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선형변경(안) 심의(사업 보류결정)

#### V. 제안사유

- 도시계획 선형변경(10m→ 8m)을 추진하였으나 보류결정으로 사업시행 곤란
- 도시계획상 10m도로이나 일반 주거지역으로 8m이상 약(100m) 도로폭이 확보되어서 현상태로 주민 및 차량통행에 커다란 지장이 없으며,
- 기타 구간(약 80m)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현황 7m이상 도로로 현재 보상이 거의 완료되어 2002년 4월경에 도로공사 착공예정으로 있어 본 사업을 보류하고,
- 본 구간과 인접 구간인 송인동 411~324간으로 사업지역을 변경시행.

#### VI. 향후계획

- 본 사업 보류결정으로 기 책정된 사업예산 약 4억원을 우선 송인동 411~324구간(B=6m, L=110m)도로개설공사 예산으로 전용코자 함.
- 사업개요 : L=110m, B=6m
- 총사업비 : 700백만원(공사비 : 150백만원, 보상비 : 550백만원)

# 사업계획변경 위치도

당초:승인동411~431간  
(B=10M,L=180M)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승인동411~324간  
(B=6M,L=110M)

동대문상세계획구역

왕산로

